

## 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교육 전반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둔다. (2017.8.31.개정)

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를 총괄한다.

③센터에는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**제3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교육 성과평가 및 질 관리 업무
3. 학생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육성과 관리
4.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관리
5. 강의평가 연구분석
6.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, 기획, 운영, 평가 및 개선방안 (2018.2.2.개정)
7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(2018.2.2.개정)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**제5조(위원장과 위원)**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 (2017.8.31.개정)

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센터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센터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및 검토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④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필요시 전문영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